##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85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성권・김 건・고동진

백종헌 • 곽규택 • 유상범

안상훈 · 강승규 · 김은혜

김대식 · 조승환 · 주진우

이헌승 · 조지연 · 강대식

김종양 • 박수영 • 김용태

의원(18인)

### 제안이유

현재 금고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보증보험 대부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및 기금 조달 제약 등으로 인해 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의 절 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근감사 의무 선임제도 또한 없음.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장은 법령이나 정관의 절차· 의무를 미이행한 금고 또는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는 제제 요구만 가 능하여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 액이 아닌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어 출자 1좌 금액보 다 적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지급이 불가하고, 일부 금고는 과대 배당을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및 금고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금고 재적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1명 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35조).
- 나. 총회 등 의결의 특례를 두어 회원의 투표로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 다. 상근 임원을 두어야 하는 금고의 규모와 상근 임원의 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
- 라. 금고의 상환준비금의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28조).
- 마. 비회원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함(안 제30조).
- 바.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하며, 잉여금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사. 준비금 자금 조성에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추가하고, 준비금의 용도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부실 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을 추가함(안 제72조 및 제72조의3).
- 아.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 관리회사를 설립함(안 제10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 자. 주무부장관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 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 정리토록 함(안 제74조의2)
- 차. 주무부장관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시금고 및 부실 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의·경고, 출자금의 감액, 자기 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등 적기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 카.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법률 제 호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300명을"을 "500명을"로, "151명"을 "2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고가"를 "금고는"으로,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 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1. 해산 · 합병
  -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 3. 임원의 해임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로, "할 수 있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금고: 1명
-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제28조제5항 전단 중 "2분의 1 이상을"을 "전액을"로 한다.

제30조 중 "사업을"을 "제28조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 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을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으로, "15"를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 범위에서"를 "20 이상을"로, "적립할 수 있다"를 "적립하 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이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납입출자좌수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로 한다.

제6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 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앙회"로 보고, 제102조의6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 102조의7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로 본다.

제72조제1항제4호 중 "국가로부터의"를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제3호 중 "금고 간"을 "금고간"으로, "자금의"를 "자금대출· 지원 또는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합병에 필요한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0조의2에"를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제3장에 제10절(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 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등이 출자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금고
- 2. 중앙회
-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 대여·개발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7. 금고등의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자산의 매입
-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같은 법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와 중앙회를"을 "금고, 중

앙회 및 관리회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회에"를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고 또는 중앙회에"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을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에"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에"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로, "금고 또는 중앙회에"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가"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고 또는 중앙회는"을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로, "금고 또는 중앙회의"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로 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가"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로, "금고 또는 중앙회에"를 "금고, 중앙회 또 는 관리회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 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를 "호(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 제8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 제80조의4를 삭제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로 하며,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는 금고
  -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한다.
- 1.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 는 감봉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 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 (受信)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 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

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의3(종전의 제80조의2)제1항 중 "(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를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로,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를 "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후단에 따른"을 "계약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을 "계약이전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를 "계약이전의"로 한다.

제80조의4(종전의 제80조의3)제1항 중 "제80조의2제1항에"를 "제80조의3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0조의2제1항에"를 "제80조의3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0조의2제1항에"를 "제80조의3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80조의2제1항에"를 "제80조의3제1항에"로 한다.

제80조의5를 제80조의6으로 하고, 제80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0조의6(종전의 제80조의5)제1항 중 "제80조의2제1항에"를 "제80조의3제1항에"로 한다.

제80조의5(관리인의 선임 및 의무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3 항제4호,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1항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제8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 ⑤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①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는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계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83조 본문 중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를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 80조의2에"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중 "복지기구"를 "새마을금고복지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임직원의"를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여 이들의"로, "별도의 기구"를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기구"를 "복지회의"로 한다.

-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 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 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산인"을 "청산인(제11호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른 업무관련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조제5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6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 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중앙회가 제68조제5항에 따른 실손의료공제계약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제13조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이 법 시행일

부터 2년 동안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 제5조(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 제7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 배당부터 적용한다.
- 제8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이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감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금 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제10조(비회원 사업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 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제1항의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	
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u>300명을</u> 초과하는	<u>500명을</u>
경우에는 <u>151명</u> 이상 출석으로	<u>251명</u>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	
1항 단서의 경우에는 <u>151명</u> 이	<u>251명</u>
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3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151명</u>	<u>251</u> 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생략)

-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② |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② (생 략)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u>금고가</u> 그 회원에게 <u>하는 통</u>지 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③ <u>제1항,</u> 제2항 또는 제7항의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임 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 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 여 회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 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신 설>

② (생략)<신설>

발송

-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 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 법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1. 해산·합병
  -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선임
  - <u>3. 임원의 해임</u>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생략)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u>할</u>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 표자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현행 과 같음)

(2)			
	다음	각 호	호의
<u>기준에</u>			
	- <u>하되</u>		

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 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 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 여야 한다.

<신 설>

<u><신 설></u>

<신 설>

③ ~ ① (생 략)

-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 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제79조 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 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제79조 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
  고로서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금고: 3명 이하
- ③ ~ ⑪ (현행과 같음)

-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④ 제 (생 략)
  -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 ⑦ (생 략)
-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 전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u>사업을</u>이용하게 할 수 있다. <u><단서</u>신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기가본(자본금, 제적립금, 그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

세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전액을
· 
<b></b>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28조
<u>제1항의 사업을</u>
제1항의 사업을 <u>다만, 제28</u> 조제1항제1
<u>제1항의 사업을</u>
제1항의 사업을 <u>다만, 제28</u> 조제1항제1
제1항의 사업을 <u>다만, 제28조제1항제1</u> 호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
제1항의 사업을 <u>다만, 제28조제1항제1</u> 호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제1항의 사업을 다만, 제28조제1항제1 호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 다.
제1항의 사업을
제1항의 사업을
제1항의 사업을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 의 100분의 <u>15</u> 이상을 법정 적 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 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 을 <u>적립할 수 있다</u>.
- ④ 금고는 <u>사업이나</u> 배당준비 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 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⑤ (생략)
-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

<u>20</u>
② (현행과 같음)
③
<u>20 이상을</u>
<u>적립하여야 한다</u> .
④ <u>정관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사업이나
<u>.</u>
⑤ (현행과 같음)
<u>⑥</u>
<u>251</u>
명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 ⑨ (생 략)
- ①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 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 을 병행할 수 있다.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⑦ ~ ⑨ (현행과 같음)
①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 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앙회"로 보고, 제102조의6제1항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공제규정에서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6제6항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6제6항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7제6항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는 "공제규정에서서 정한다"로 본다.

-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 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 1. ~ 3. (생 략)
  -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 용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8조제2항에 따른 <u>금고 간</u> 3. -----<u>금고간</u>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 4.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을 위한 자금지원 <신 설>
  - 5. (생략)
  - ② (생략)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1	

- 1. ~ 3. (현행과 같음)
-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 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 로부터의 -----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자금 대출· 지원 또는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합병에 필요 한 자금----
-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
-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 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 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 출 또는 지원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 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 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등이 출자하여 새 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금고
- <u>2</u>. 중앙회
-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 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신 설>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 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 행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 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 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u>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u> <u>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u> <u>득</u>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
-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을 말한다)의 인수

-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수임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7. 금고등의 위탁한 업무용·비 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 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신 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 글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자산의 매입
-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

<신 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글 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 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 1. (생략)
- 2. 중앙회에 대한 감독: 주무부 2.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 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 리회사"로, 같은 법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 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74조(감	독 등)	①	
			<u>-</u>
고, 중양	<u></u> 화 및	관리회/	<u> 사를</u>
1. (현행	]과 같음	음)	·

장관

-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 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글 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 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은 금고에 한정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②
<u></u>
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③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 ④ 주무부장관은 <u>금고 또는 중</u> <u>앙회를</u>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 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u>금고 또는 중앙회에</u> 대 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 항이 위법·부당한 경우(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④
또는 관리회사를
⑤
금고, 중앙회 또는 관
리회사에
1. (현행과 같음)
<ol> <li>(현행과 같음)</li> <li>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li> </ol>
,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의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의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의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 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⑦ (생략)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할 수 있다.

## 1. · 2. (생략)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
분) 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u>&lt;단</u>
<u>서</u>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②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

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 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u>금고 또는</u>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u>금고 또는</u>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 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u>금고 또</u> 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 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 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u>금고</u> <u>또는 중앙회가</u>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 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u>사가</u>
③
또는 관리회사의
<b>4</b>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금고, 중
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u>금고, 중앙회 또</u>
는 관리회사의
⑤ (현행과 같음)
세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u>금고 또는</u> <u>중앙회에</u>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신 설>
- ③ (생 략)
-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금고, 중         양희 또는 관리회사에
<u> 8위 그는 인터위계에</u>
· 1. ~ 3.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4 <u></u> <u><u></u><u><u></u></u></u>
<u>(제8호는 제외한다)</u>

## ⑤ • ⑥ (생 략)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 조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설>

⑤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경영지도) ①	
<u>.</u>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
   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 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 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 태에 있는 금고

-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 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 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 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 (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 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 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 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 야 한다.
- 1.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견책 또는 감봉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 한 수신(受信)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선임(選任)
-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
   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
   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
   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 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

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 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

   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 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 <u>령</u>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 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 다.
-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

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 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 고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 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 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다.
-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 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 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 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①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 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u>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u> 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 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 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 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 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 야 한다.
- ⑤ (생략)
- ⑥ 주무부장관은 <u>제1항에 따라</u>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⑦ (생략)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 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 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u>및</u>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u> 부실금고에사업과</u>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
이전
⑤ (현행과 같음)
⑥ <u>계약이전을</u>
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이전의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권리・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이를 승계한다.
-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u>제80조의2제1</u> <u>항에</u>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 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도 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

① 제80조의3제1항에
② 제80조의3제1항에
<u>.</u>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80조의3제1항에
⑤ <u>제80조의3제1항에</u>
⑤ 제80조의3제1항에            ⑥         제80조의3제1
⑤ 제80조의3제1항에            ⑥         제80조의3제1
⑤ 제80조의3제1항에            ⑥         제80조의3제1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 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 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 정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 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 <삼 제>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 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 0조·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의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80조의5(관리인의 선임 및 의무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3항제4호, 제80조의2제6

<u>항 및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u>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

<u>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u> <u>하여야 한다.</u>

③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 계에 있는 사람은 제1항의 관 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제8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⑤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① 주무 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 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 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 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 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 호, <u>제79조의5제1항제1호에</u> 따

<u>⑦ 「민법」 제35조제1항, 「상</u>
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
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
지는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계인"은 "관
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
관"으로 본다.
<u>제80조의6(</u> 파산신청 등) ①
<u>제80</u> 조의3제1항에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제79주의5제1항제1항 제80

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
· 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4조
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
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u>복지기구</u> 설치 등) ① 중 저 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u>임직원</u>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별도의 기구</u>를 설치·<u>운</u> 영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u> 조의2에</u>
네84조( <u>새마을금고복지회</u> 설치
드) ①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
한다)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
도를 확립・운영하여 이들의
<u>XII</u>
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
<u>라 한다)운영한다</u> .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

② <u>제1항의 기구</u>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벌칙) ① (생 략)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업이	] 3	수류병	별로	장	래에	ス	급	할
	급o	에	충당	강하기	7] .	위하	· 0=	준	비
	금을		]상(	計上	)하.	고,	이틑	1	별
	도로	르 조	d립 ō	ोज	회	계	처리	하	여
	야	한다	· <u>·</u>						
	<u>4</u>	복지	회의	1					
]	853	<u> </u>	칙)	1 (	현형	뱅과	같음	<u>)</u>	
	2								
		<u>청</u> 신	<u> -</u> 인(	제11	호의	-	경우	에	는
	<u></u>	헌험	<u> 업법</u>	J	제1	02조	일6		및
	제1	02조	.의7억	에 [1	가른	업	무관	·런	자
	를	平有	함한τ	<u> </u>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 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 ③ ④ (생 략)
-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⑥ (생략)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 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 ⑥ (현행과 같음)